

충청북도 디지털 전환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충청북도의회
산 업 경 제 위 원 회

충청북도 디지털 전환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발 의 자 : 임병운 의원 등 7인

2.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

가. 발의일자 : 2024년 11월 15일

나. 회부일자 : 2024년 11월 15일

3. 제안이유

본 조례의 전부개정은 디지털 전환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기술지원·선도사업 발굴 등 산업 디지털 전환 활성화 체계를 폭 넓게 규정하여 충청북도 디지털 전환의 촉진을 도모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디지털 전환 촉진 기본계획 수립 사항 추가 규정 (안 제5조)
- 디지털 전환 촉진 지원 사항 추가 규정 (안 제7조)
- 디지털 전환 위원회 수당 및 비밀보호 의무 규정 (안 제12조, 안 제13조)
- 디지털 전환 위원회 관계 기관 협조 근거 규정 (안 제14조)
- 산업 디지털 전환 선도사업 발굴 및 지원 (안 제15조)
- 중소기업 및 창업자 대상 디지털 전환 지원 (안 제16조)
- 디지털 기술 경진대회 및 후속 지원 근거 규정(안 제18조)

5. 검토의견 (산업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종섭)

가. 발의배경

-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흐름에 따라 디지털 기술을 산업 전반에 적용하는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산업·경제·사회·문화·행정 등 모든 분야에서의 디지털 전환이 핵심 정책과제로 대두됨
- 관련 제도의 법제화 속도가 기술과 산업의 디지털 전환 속도에 미치지 못하는 관계로 디지털 기술 및 산업 디지털 전환을 충족도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폭 넓게 규정해야함
- 이에 디지털 전환 촉진 기본 계획 수립 사항과 지원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산업 디지털 전환 선도사업 발굴과 기술지원 등을 도모할 필요가 있어 조례의 전부개정을 추진함

나. 개정안의 주요 조항에 대한 의견

- 안 제5조는 디지털 전환 촉진 기본계획 수립사항에 정보교류, 투자 확대, 소요재원, 기술개발·연구사업 등의 사항을 포함한 것으로 디지털 전환을 촉진시키기 위해 포함하는 것이 타당함
- 안 제7조는 본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대상을 디지털 전환을 위한 국내외 교류·협력 사업과 스마트 도시·제조·농업·문화 등 사회 모든 영역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조문의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안 제15조는 상위법령인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산업 디지털 전환 선도사업의 선정과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필요한 사항이라 할 수 있음

- 안 제16조는 디지털 기술집약형 중소기업과 창업자에게 디지털 전환과 공동연구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지원의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적절하다 판단됨
- 안 제18조는 기술간 융·복합 촉진을 위한 혁신기술 경진대회 개최를 통해 디지털 전환의 판로를 마련한 점에서 필요하다 판단됨

다. 상위법령 등 검토

-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국가는 산업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고 되어있고, 동조 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산업 디지털 전환을 위한 지역별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 또한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선도사업을 발굴하여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있고, 제16조제1항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5조에 따라 선정한 선도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기업등에 다음 각 호와 관련된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 이에 상위법령에 디지털 전환을 위한 시책과 그 추진 및 디지털 전환 선도사업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바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에 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에 대하여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라. 종합의견

- (필요성) 본 조례의 개정은 디지털 전환을 사회 전 분야로 확대하여 촉진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필요하다고 보여짐
 - (타당성) 본 조례 개정안에서는 충북의 여건에 맞게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과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디지털 선도사업 지원을 위한 사항을 적절히 규정하고 있으며, 그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법적합성) 관련 법령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조문체계와 구성 등 법률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음
 - (종합의견) 기존 조례의 개정을 통해 충청북도 디지털 전환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필요성, 타당성 등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해당 조례의 개정은 적절하다 보여짐
- 향후 관계부서에서는 본 조례를 바탕으로 충청북도만의 선제적인 디지털 전환 대응과 산업 디지털의 선도사업 추진 등을 통해 기술발전을 더욱 활성화하여 향후 효율적인 디지털 전환 정책 마련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